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선**, 석호원***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조직들을 유형화하여 적합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어떤 조직이 어떤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퍼지셋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에 사용된 기준은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이다. 분석결과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가 가장 높은 수준인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자활기업, 농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 협동조합 등은 통합형으로 분류되었으나 퍼지점수가 중간수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준통합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리고 준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등이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신탁과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준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공부조형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퍼지셋 이념형 분석

I. 서론

오늘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이 등장하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제정되었다. 한편 지자체 단위에서는 마을기업 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 24956).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BK21PLUS사업단 박사후연구원(eslee316@skku.edu).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myvirtuoso@naver.com).

립 및 그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또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¹⁾

다수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은 학문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임에는 동의한다.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복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은 공익추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곧 공익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활동이라는 특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이 같은 특성은 오늘날 폭증하는 복지 수요, 장기화 되는 실업문제, 지역 불균형 발전 등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육성 및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산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에서는 두 가지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는 바, 첫째는 사회적경제에 어떤 조직을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가, 둘째는 관할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²⁾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판단할 부분은 “농협, 신협, 수협, 축협 등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서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은 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수협, 축협인데 이 조직들은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조직들이다(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인 관할부처는 사실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정책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관할부처는 각기 다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을, 행정자치부에서는 2011년부터 마을기업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법인과 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법인과 조합, 단체들을 관할하고 있다. 이 조직들이 질적으로 다르다면 각기 다른 관할부처가 존재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법적으로 중복지위를 갖는 사례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10월 현재 90여개에 달한다(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5. 10. 5).

2) 이와 관련해 제3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부위원회회의록 제6호, 2014. 12. 3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 증가하고 있어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³⁾ 이는 사회적경제조직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양쪽 모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하게 분화된 만큼 시장성이 강조되는 조직,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도 조직의 운영자체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 등 조직의 특성도 다를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의 정책은 조직의 특성과 관계없이 인건비지원, 세금감면 등 일률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 혹은 이 조직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범주화 하고 이들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해외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입법은 2010년 이후 본격화 될 만큼 최근의 현상이며,⁴⁾ 조직의 유형화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의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는 개념과 역사에 관한 거시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화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특성 규명은 조직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의 연구로써 사회적경제 논의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화해 각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조직들을 유형화하여 적합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와 사회적경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후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와 지원정책을 간략히 개괄한다. 5장에서는 어떤 조직이 어떤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제품/서비스의 수혜범위, 시장성, (주요)목적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6장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를 요약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3) 예컨대 2014년 12월 기준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조직은 130개 이상이고, 3개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도 증가하고 있다(제3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2014. 12. 3. p.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최혁진 발언 中).

4) <해외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현황>

국가	연도	법명
스페인	2011.5	사회적경제법
에콰도르	2011.5	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
멕시코	2012.5	사회연대적경제법
포르투갈	2013.3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캐나다 퀘벡	2013.10	사회경제법
프랑스	2014.6	사회연대적경제법안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2014a: 9 재인용)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주제로 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를 연구주제로 한 경우는 주로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연구이다.

김윤호(2010)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서비스의 수혜자가 일반주민인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 사업의 규모와 이익을 적정수준에 한정하는가 아닌가의 여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였다. 김윤호(2010)의 연구는 실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존해 이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두 조직을 개념상 비교한 것으로, 실제 국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이론적 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최조순(2013)의 연구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제도적으로 유사함을 강조한다. 정책의 기원/배경, 정책의 이념/가치, 정책의 목표, 정부와 실행주체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두 조직이 정책의 기원과 가치, 이념, 목표 측면이 상이하지만 정부와 수행주체와의 관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구체적인 사업 분야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모방하면서 동형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결국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처럼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김의영·임기홍(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30개 조직군을⁵⁾ 대상으로 2단계 분석을 통해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예비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사회조직 I, 기타 사회조직 II로 유형화하였다. 분석기준 1단계는 '포괄적 분류'로 X축을 조직 구성 원리(인적 결합지향-자본 결합 지향), Y축을 사업의 기본적 방향(지역 공동체 지향-개별 분야 서비스 지향)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는 '사회적경제 관련성 분석'인데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의 세 가지 요소를 각각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여기에 ○, △, - 표시를 하여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두 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4개의

5) 여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자활센터 뿐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조직들까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의영·임기홍(2015)의 연구는 국내의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조직군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1단계와 2단계 기준으로 제시된 분석틀의 기준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 △, - 를 판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의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게 판정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분석결과가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는 과정도 생략되어 있어 방법론상 많은 한계가 있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외국에서도 현재까지 개념정의에 관한 논문이 상당수 이루어질 만큼 매우 다양하다.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Defourny and Develter, 1999; Moulaert and Ailenei, 2005; Monzon and Chaves, 2008 등).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크게 시장과 공공부문의 중간영역 즉,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과 제3부문이 사회적경제라는 접근이 있다. 시장과 공공부문의 중간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경우는 이익추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사익추구 영역을 시장으로, 공익추구 영역을 국가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속한 영역이 사회적경제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포함되고 배제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비영리조직은 사익과 공익의 스펙트럼에서 공익에 분류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 예인 사회적기업⁶⁾에는 비영리조직이 포함된다. 한편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는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은 오늘날 사회적경제 개념정의 논의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 드푸르니&드벨테르가 제시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기준의 첫째는 법/제도적 접근(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둘째는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 셋째는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을 사회적경제로 간주하는 접근이다. 법/제도적 접근은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가장 전통적인 접근으로 프랑스의 19세기 협동조합 활동과 이에 대한 법적 인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접근법은 20세기 이후 유럽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협동조합 기업(co-operative enterprise), 공제조합(mutual benefit societies),

6)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관한 학문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Defourny and Develtere, 1999; Moulaert and Nussbaumer, 2005; 장원봉, 2007; 노대명, 2010; 이은선, 2015a 등).

협회(associations)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규범적 접근은 제3부문이 추구하는 가치, 원칙과 제도적 접근을 결합한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사용하는 명칭이 협동조합,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동조합이 아닌 조직도 존재하고,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제도에 의해 이익 추구 활동에 집중하거나 준 공공조직(para-public agency)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의 특별한 조직형태를 사회적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접근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목적이 자신의 소속을 넘어선 다른 공동체(wider community)에 까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이익추구보다 구성원 또는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수익배분보다 사람과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 협동조합, 협회, 상호공제조합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접근에 의해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면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접근법은 NPO를 포함한 비영리 부문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사회적경제를 비영리 부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에 상당히 의존해 왔는데, 미국에서 나타난 비영리부문의 수익추구 활동은 유럽에서 논의되던 기존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장을 가져올 정도로 최근의 개념이다(Defourny and Develter, 1999: 11-19; 이은선a, 2015: 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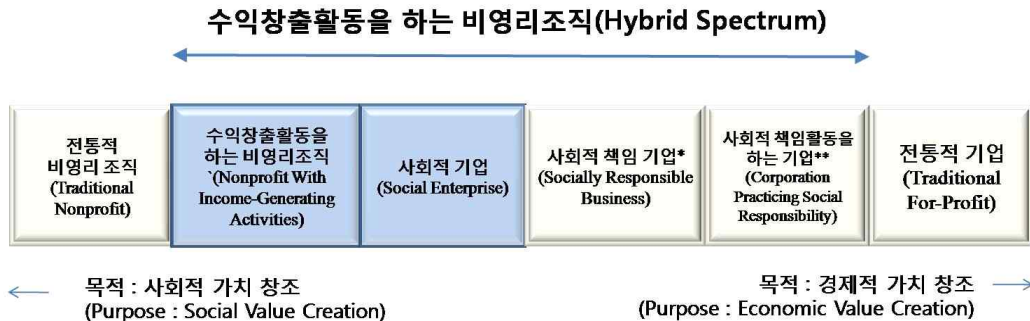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와 기관들의 주장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OECD(1999)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 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요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인 목적,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1996년 EU의 재정지원하에 유럽 15개국의 연구자가 참여한 EMES Network에서는 지속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유지, 활동의 지속 및 종료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높은 자율성의 확보, 조직의 재정적 생존가능성이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잘 아는 높은 경제적 리스크 의식의 보유, 최소한의 유급 직원 보유,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의 보유, 지역사회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집합적 특성(collective dimension)의 견지, 자본의 소유 정도와 분리된 의사결정 권한의 보유, 기업 활동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의 확보, 이윤배분에 대한 제한 및 이윤극대화에 대한 금지 등이 확실하게 관찰될 수 있는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았다(Defourny, 2001:16-18; Defourny and

Nyseens, 2006: 5-6). Social Economy Europe에서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 구성원 자격의 자발성 개방성, (조직)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과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의 고른 안배, 연대와 책임의 원칙의 준수·적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잉여의 대부분이 자속가능한 발전 및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조직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하였다(신명호, 2014: 25). EU(2012)에서는 공공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조직, 법적 근거 등을 가진 형식적 조직, 설립과 해산/조직 구조나 활동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해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조직, 가입과 탈퇴의 자유 보장, 수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할 경우 각 조직 구성원의 출자금이나 회비의 차이가 아니라 활동 참여나 이용정도를 기준으로 함,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 일부 자선단체를 제외하고 주로 기층 수준의 조직 구성원에 의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는 조직 등으로 정의하였다(EU, 2012:17-18; 김의영·임기홍, 2015:63 재인용). 드푸르니(2004)는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 독립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지는 조직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인데 실제 국가별 사례에 적용해 어떤 조직이 여기에 포함되는가를 논의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어떠한 조직이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가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주로 해당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 역사와 제3부문 논의를 결합해 특정형태의 조직을 나열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Lorendahl, 1997; Sybille Mertens, 1999; Moulaert and Ailenei, 2005 등). 또한 특정 기준의 설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분류하는 경우는 수익추구활동, 즉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시장지향과 비시장지향(혹은 공익지향)의 스펙트럼에 각 조직들을 배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앨터(Kim Alter, 2004)의 분류에 의하면, 조직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전통적기업을 양축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세부조직형태를 제시한다. 그런데 앨터(Alter, 2004)는 목적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양축은 시장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중간에 위치한 조직들은 수익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 위치 지어진 것이다.

〈그림 1〉 수익성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의 스펙트럼



출처: Kim, Alter(2004)

하지만 시장성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분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수익추구 활동을 중요시 한다.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정도는 해당 조직이 소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조직의 추구목적이 수익창출이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화 할때는 실질적으로 조직의 시장성과 목적성, 수혜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사회적경제조직을 구분하고 유형화하는데는 두 가지 분석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어떠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고 배제되는 조직을 가려낼 수 있어 정책대상 조직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의 포함여부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속성, 예컨대 사회적 목적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위치 짓는 것이다. 이 경우 수익성이 약한 조직에는 시장지향적 정책을 처방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국내의 어떤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시장성·목적성·수혜범위를 기준으로 그 특징을 규명할 것이다.

2014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

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즉, 조직의 대상은 서로 상이하다. 본 연구는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므로, 상기 법안 중 가장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한 새누리당의 법안을 준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설정하였다.⁷⁾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신협, 농·수협,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연초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의 17개 조직군이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적합성 여부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논의한 선행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제시한 기준,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드푸르니의 연구를 토대로 지표를 제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표 1〉 사회적경제조직 적합성 여부 지표

구분	지표	
OECD(1999)	A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및 공익활동
	B	이윤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경제 사회적인 목적(실업,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한 해결책
Defourny(2004); Defourny & Develtere(1999)	A	이윤보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시됨
	B	자율적인 운영
	C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D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 및 노동을 우선
SOCIAL ECONOMY EUROPE	A	자본보다 사회적 목적이 우선
	B	구성원의 자격은 자발적 개방적
	C	구성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의 고른 안배
	D	연대와 책임원칙의 적용
	E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F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원의 이익,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

각각의 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판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련 법안 및 공식 지원기관의 운영지침 등 정부 공식문서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검토된 법안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7) 새누리당이 제시한 법안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가 제외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이고, 여기에서 신협을 제외한 것이 정의당이 제시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이다.

원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무법인 업무안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화 모형

1) 기준 변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문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적경제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임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유형화 기준을 조직설립의 목적성,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 시장성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1) 목적성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일반 경제조직과 다른 점은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적 혹은 공익추구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OECD(1999)의 사회적경제 정의에도 “주요한 목적에 대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인 목적,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OECD, 1999: 4). 국내의 연구에서도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간주한다(장원봉, 2007: 27).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 즉,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한 조직들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대상으로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그 목적성이 이론과 개념에 부합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으로서 공익은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다. 공익은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공공행정 및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적·이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공익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 중 실체설은 공익이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총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나 규범적으로 옳은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도덕적 절대가치 관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경쟁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이 경쟁 및 타

협을 통해 도출된 균형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유민봉, 2015).

이 가운데 사전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특수한 이익과의 구별을 위한 “사회구성원간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shared common interest)” 내지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관련되는 이익” (유민봉, 2015)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념 또한 그 이익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과학연구에서 실천적으로 공익을 개념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연구의 목적 내지 특성에 따라 그 개념은 연구자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및 그들의 삶을 위한 자조적 노력에 있음에 착안하여, 조직설립목적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사회적 삶을 위한 여건의 개선” 등과의 관련성 정도를 중심으로 ‘목적의 공익추구 정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동 조작성 정의를 바탕으로 공익추구 정도를 상한(1), 사익추구 (0)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2) 시장성

사회적경제의 용어정의에서 ‘경제적 활동’은 사회적목적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경제적 활동은 시장지향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을 논의한 연구들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기업가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산업화가 느렸던 나라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렸다. 협동조합들은 국가와의 협상으로 특별규정의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경쟁환경에서 활동해야 했으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시장과 유사해지는 것이었다(FIELDS, Di Maggio & Powell, 1983). 협동조합의 경우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쟁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탓에,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문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신명호, 2009: 16).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수익창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 뿐 사회적경제조직은 시장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 수익추구 활동을 중요시 하는 것이며 수익이 창출되는 정도는 해당 조직이 소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조직의 추구목적이 수익창출이기 때문은 아니다. 유형화에 있어 시장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특징에 따라 조직의 설립 자체가 공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⁸⁾어떤 조직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이 지닌

8) 예컨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취약계층고용을 선정해 매년 성과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자체가 노

시장성의 특징은 정책지원의 방향이나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정책수단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유형화 모형에서는 시장성을 ‘조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수익추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로 정의하여 수익추구 정도가 중요하면 1,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0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수혜범위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목적 혹은 공익을 추구한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사회적목적 혹은 공익이 달성되는 것인가’이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논의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철저하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직들은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특성인 ‘조합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체성을 필요로 했고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되어 규모와 정부교섭력은 크게 신장하였으나,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떨어져 정부의 일부처럼 변모된 역사가 있다(김영철, 2011: 39-42).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상당 부분은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과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탈리아 사례처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배척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점차 진화하면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는 특정 집단을 넘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앞서 목적성과 시장성이 사회적경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특징이라면 수혜범위는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함에 있어 논란이 되는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체 조직군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범위까지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목적성, 시장성만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까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고려할만 한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유형화 모형에서는 수혜범위를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로 정의하여 해당 수혜범위가 불특정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1, 특정 멤버십에 기반하면 0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동통합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퍼지셋 방법론은 고전적 집합론의 발전된 형태로, 확률이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변수중심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과관계의 크기를 규명하려는 변수중심연구는 독립된 하나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요인의 결합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분석 사례에 대한 동질성 가정 및 독립변수의 순효과(net effect)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는 문제가 있다(Ragin, 2000; 최영준, 2009). 반면 퍼지셋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의 분석보다는 집합관계의 논리적 연산과정을 통해 충분조건 및 필요조건 분석을 가능케 하며 사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사례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질적연구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하는 변수중심 연구의 연결점으로서 중간 사례 연구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현재 퍼지셋은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원인의 결합적 영향력 분석[질적비교방법(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s)]과 사례의 유형화[이념형 분석 방법(Fuzzy-set ideal type analysis)]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동 분석은 퍼지집합으로 전환된 이념적 개념에 분석대상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퍼지소속점수(fuzzy membership score)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분석대상의 속성을 점수화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정도와 변화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vist 1999; 김종일, 2000). 퍼지점수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집합이론이 분석대상의 속성을 소속의 정도의 여부(1, 0)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소속(1), 비소속(0)의 양분이 아닌 0.3, 0.5, 0.75 등의 다양한 소속점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agin, 2008).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가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넘어 분류된 유형에 각 사례가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는가를 아울러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퍼지점수는 포함된 사례에 따라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며 무엇보다 분석 대상의 속성에 관한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이 의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분류는 중범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형의 기준이 이론적으로 구성되므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이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형분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의 주관성 및 임의성에 관한 문제이다. 퍼지셋 분석의 경우 추상적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 등간 혹은 비율자료로 구성된 대리변수와 요인점수를

활용하는 변수중심연구와 달리 위의 자료 이외에 연구자의 성찰을 통해 등급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의 표면타당성(face validity)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Sartoi, 1970; 박석희, 2012, 재인용).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자의적 해석이 아닌 이론적이고 실질적 지식을 활용해 사례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박석희, 2012) 유형분류의 자의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퍼지셋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17개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혜범위, 시장성, 목적성의 정도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과 법령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유형의 해당정도를 제시하고 퍼지셋 Calibration 함수를 통해 퍼지셋 소속점수로 변환하도록 한다.

〈표 2〉의 nmarket, nscope, npurpose는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화 변수인 수혜범위, 시장성, 목적성을 나타내며 붉은 선은 각 유형변수의 해당정도에 대한 강도의 분기점(0.5)으로 소속점수가 0.5이상인 경우 동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 이하인 경우 약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퍼지셋 이념형은 총 8개로 나타날 수 있다(Mm * Ss * Pp).

〈표 2〉 퍼지셋 방식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

범주			유형		
목적성 npurpose	시장성 nmarket	수혜범위 nscope			
P(강함)	M(높음)	S(넓음)	P*M*S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	1
P(강함)	M(높음)	s(좁음)	P*M*s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	2
P(강함)	m(낮음)	S(넓음)	P*m*S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	3
P(강함)	m(낮음)	s(좁음)	P*m*s	준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	4
p(약함)	M(높음)	S(넓음)	p*M*S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5
p(약함)	M(높음)	s(좁음)	p*M*s	준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6
p(약함)	m(낮음)	S(넓음)	p*m*S	공공부조형 사회적경제조직	7
p(약함)	m(낮음)	s(좁음)	p*m*s	-	8

IV. 국내 사회적경제조직형태 및 지원정책 현황

1. 조직형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1,672개, 협동조합 9,951개, 협동조합연합회 52개, 사회적협동조합 597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개, 중소기업협동조합 965개, 농업법인 16,482개, 산림조합 142개, 자활기업 247개, 마을기업은 2014년 12월 기준 1,249개이다.⁹⁾

국내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조직을¹⁰⁾ 지칭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1957년 3월에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최초의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농협·수협·축협 등은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2012년 12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¹¹⁾ 새롭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¹²⁾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마을’이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동하는 조직적 구조”를 의미한다(신상철, 2016: 26).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진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

9)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파악하였고, (검색일: 2016. 12.20),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2016년 12월).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근거하는 조직으로 공식적인 현황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연도별 마을기업의 규모는 행자부 공무원인 신상철(2016)이 기고한 글에서 거의 유일하게 확인 가능하다.

1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11)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목적)

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의 공동창업 모델을 말한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된 조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직들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조직들의 명칭과 근거법 그리고 관할부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³⁾

〈표 3〉 사회적경제조직, 근거법, 관할부처

사회적경제조직	근거법	관할부처(담당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노동부(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협동조합정책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협동조합운영과)
중앙·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부(자립지원과)
마을기업	행자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자부(지역경제과)
법인·조합·회사· 농어업법인·단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부(농촌복지여성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장애인고용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부(사회서비스지원과)

자료) 기획재정위원회(2014a: 11) 재구성.

2. 지원정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일부, 사회보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각종 교육지원과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며 조례에 따른 세제지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은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가장 많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조직이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지원정책은 주로 교육과 경영컨설팅, 판로개척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13)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4월 30일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등 67인,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 등 65인,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 박원석의원 등 10인, 2016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등 27인, 2016년 10월 11일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했다. 각각의 원안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가 다른데, 새누리당의 법안이 가장 넓게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어떤 조직이 포함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으로 후보군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률안에 근거해 〈표 3〉을 작성하였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¹⁴⁾ 인건비/사업개발비/세제혜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시 세금감면에 대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모와 적용범위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마을기업은 신규지정시 시에서 5천만원, 2차년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로 지급하며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2016).¹⁵⁾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주요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¹⁶⁾ 또한 농업법인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만큼 자연재해 상황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과 정부차원의 금융 지원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정부지원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금융지원과 경영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산림경영지도사의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 뿐 아니라 훈련원에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대리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과 금융기관, 조합중앙회를 통한 금융지원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¹⁷⁾ 엽연초 협동조합은 영농조합으로 농업 법인이 받는 정부지원과 거의 일치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에 더하여 협동조합으로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장년 인턴제, 청년 인턴제를 통해 인건비의 최대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과 사업지원비, 판로 개척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세부적으로 존재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건보 보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¹⁸⁾ 또한 기관운영에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4)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설비 도입 등 협동조합당 500만원 한도에서 초기 사업 자금지원을 선별해 실시하고 있다.

15) 마을기업의 경우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에 걸쳐 8천만원원 이내의 사업비를 행정자치부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억원 이내 임대보증금을 5년 후 반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16) 구체적으로 국세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합원으로서 배당소득세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전액 면제 혹은 일부 감면을 받고 있다.

17)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fcf.or.kr/> 검색일: 2016. 12. 15)

18)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장애인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에 대해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신규 장

여기에 대한 교육이 지원된다. 사업개발비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자활센터의 경우 기초운영에 대한 교육지원을 정책적으로 수혜받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형태이므로 지원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사업개발비를 보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이 기관은 법적으로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을 받으며, 다른 재정지원은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을 위탁하거나 정부재정사업에 입찰시 우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 관련법안, 관할 중앙부서의 시행지침, 해당 조직을 총괄하는 공식 홈페이지 등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 정부지원정책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정책 요약

	주요 지원 정책									
	인건비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 (4대보험)	교육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	○	○	○	○	○	○	○	○	○
협동조합				○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	
생활협동조합				○	○	○	○	○	○	
마을기업	○	○		○					○	
자활기업	○	○		○	○	○	○		○	
농업 법인단체				○	○				○	○
산림조합				○	○				○	○
중소기업 협동조합	○	○		○	○	○	○	○		○
업연초 협동조합				○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	○	○		○	○
자활센터	○			○	○	○	○		○	○

개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이다. 또한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전액감면, 다음 2년간 50% 세제 감면, 대출금리의 차감 등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V.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와 유형 분석 결과

1. 사회적경제조직 부합 여부

해당 조직 관련 법안 및 공식 지원기관의 운영지침 등 정부 공식문서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요건충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OECD의 기준과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가 제시한 기준 그리고 SOCIAL ECONOMY EUROPE이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한국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판정하였는데, 세 조직 모두 OECD에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인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가 제시한 기준의 A, B, C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단 D에 대해서는 법률에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출자액에 따른 배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 비교해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SOCIAL ECONOMY EUROPE의 C에서는 협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에 있으므로 △로 판정하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처럼 조합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므로 이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시행지침에 비추어 OECD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윤보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시되며, 지역주민을 고용해야 하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각각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 A 와 B를 충족한다. C에 대해서는 출자한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어 총회 이상의 규정을 아마도 구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D의 요건인 수익의 배분은 본 형태가 기업의 성격을 강조할 뿐 아니라 배분의 구체적 제한 내용이 없고, 주식회사의 형태도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이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동조합의 원리에 기초를 두는 점을 감안한다면 D 또한 충족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공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여 종합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에 따르면 A는 충족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한정성에 따른 개방성은 중간정도이므로 B는 일부 충족으로 볼 수 있다. C의 경우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하나 현실적

으로 고른 안배라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였을 때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자활센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히 높아진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을 말한다. 이 조직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공익활동이라기보다는 조직 자체가 노동통합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OECD에서 제시한 조건 중 A에 대해서는 일부충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을 적용하면 A에서 D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1/3이 되어야 하므로 SOCIAL ECONOMY EUROPE 기준 개방성의 측면에서 제한이 있어 일부충족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조직과 달리 정부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E도 일부충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농어업법인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이 조직들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된 것과 그렇지 않은 조합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OECD기준의 A, B 모두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농어업법인단체의 현황과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에 상당히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조직에 이익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은 일부충족 되며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다수 존재하여 C도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으나 D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충족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을 적용하면 B는 개방적이나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한다는 제약이 있어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고, E는 충족하지만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책대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조직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 업무만 주로 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징(민주성·자율성)과는 다른 원칙(시장·건전성 감독)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조직들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⁹⁾ 본 논문에서는 동 조직의 포함여부 판단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검토하였다. 신협의 경우 공익활동을 조직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ECD의 A를 충족하지 못한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에서는 이윤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A를 충족하지 못한다. C의 경우 출자자수와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충족으로 판단하였으며 적립금을

19) 기획재정위원회. (2014b).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4. 11.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D는 미충족으로 판정하였다.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의 경우 지역사회이익 보다는 조합원의 수익적이고 배타적 이익이 중요해 보이므로 A는 미충족, C는 앞선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D기준과 동일한 사유로 미충족, D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미충족으로 판정하였고 나머지 기준에 대해서는 충족으로 판정하였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탁과 마찬가지로 OECD 기준 A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특정한 경제 사회적목적 보다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B는 일부충족으로 판단하였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에 의하면 동 조직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나 이윤추구도 중요한 목적이므로 A는 일부충족, 출자좌수와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C는 일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와 D는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에서는 자본의 목적이 사회적 목적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충족, 실질적으로 가입에 개방성이 있으나 주소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충족, 구성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의 고른 안배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농·수협은 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을 기준으로 한다. 중앙회는 신탁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직으로 그 분석결과도 신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농업협동조합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농·수협 지역조합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ECD의 기준 B만을 충족한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을 적용하면 A에서 D까지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에 의하면 개방성 부분에서 해당 지역에 철저히 한정하기 때문에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으며, 보편적 이익의 고른 안배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영업초 협동조합은 개인이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해당업종의 기업이나 조직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OECD에서 제시한 기준의 A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먼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해 판단하였는데,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A는 일부 충족한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을 적용하면 A에서 D까지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을 적용하면 임업인들의 수익향상을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A는 일부충족, 구성원의 자격이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B 또한 일부충족 하는 반면 C는 조

합활동에 참여한 조직 혹은 개인의 개별이익 향상을 도모하므로 미충족, D에서 F까지는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직의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이 산림조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각 개별기업은 기업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며, 수익의 배분은 결국 기업내에서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 D를 충족하지 않는다.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 A와 B는 일부충족하며 C는 앞선 D의 판단근거와 동일한 이유로 미충족으로 판단하였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 A, B를 모두 충족한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법률에 충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판단할 만한 세부규정 등이 부재하므로 일부충족으로 판정하였다. D 기준 역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의 사업내용에서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 및 노동을 우선한다고 판단할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미충족으로 판단하였다. SOCIAL ECONOMY EUROPE의 기준의 경우, A와 B는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이유로 일부충족, C는 미충족으로 볼 수 있으나 D에서 F까지는 충족으로 판단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충족 여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검색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기업적 방식을 도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기업 방식의 활용에는 여러모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A는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을 적용하면, A와 B는 충족하지만 장애인들이 직접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C는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합되어 있다. 이에 수익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람 및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D도 일부충족으로 판단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SOCIAL ECONOMY EUROPE 기준의 A와 D는 일부충족으로 보았으며, B는 구성원의 자격이 장애인으로 일부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충족,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과 이를 통한 규제를 받으므로 E 또한 일부충족으로 판단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을 때, 기업적 운영방식이 아니므로 OECD기준의 A를 충족하지 않는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명시가 없고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충족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세부사업 상당부분이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

법인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통제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SOCIAL ECONOMY EUROPE의 E는 일부충족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사회적경제조직 요건 충족 여부

	OECD		Defourny(2004); Defourny & Develtere(1999)				SOCIAL ECONOMY EUROPE					
	A	B	A	B	C	D	A	B	C	D	E	F
사회적기업	O	O	O	O	O	O	O	O	O	O	O	O
협동조합	X	O	O	O	O	O	O	O	△	O	O	O
사회적협동조합	X	O	O	O	O	O	O	O	O	O	O	O
생활협동조합	X	O	O	O	O	O	O	O	O	O	O	O
마을기업	O	O	O	O	O	X	O	△	△	O	O	O
자활기업	△	O	O	O	O	O	O	△	O	O	△	O
농어업 법인단체	△	△	△	O	△	X	X	△	X	X	O	X
신탁	X	O	X	O	△	X	X	O	X	X	O	X
농·수협 지역조합	X	O	O	O	△	△	O	O	△	O	O	O
새마을 금고	X	△	△	O	△	X	△	O	△	△	O	O
산림조합	X	O	O	O	O	O	△	△	X	O	O	O
중소기업 협동조합	X	O	O	O	O	X	△	△	X	O	O	O
업연초 협동조합	X	O	O	O	△	X	△	△	X	O	O	O
장애인표준사업장	△	O	O	O	△	△	O	△	O	△	△	△
사회복지법인	X	O	O	O	△	O	O	O	O	O	△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X	O	O	X	X	O	O	O	O	O	X	O
자활센터	X	O	O	△	X	O	O	△	O	O	△	O

주1) OECD: (A)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및 공익활동, (B) 이윤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경제·사회적인 목적(실업,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한 해결책

주2) Defourny(2004); Defourny & Develtere(1999): (A) 이윤보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시됨, (B) 자율적인 운영, (C)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D)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 및 노동을 우선

주3) SOCIAL ECONOMY EUROPE: (A) 자본보다 사회적 목적이 우선, (B) 구성원의 자격은 자발적 개방적, (C) 구성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의 고른 안배, (D) 연대와 책임원칙의 적용, (E)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F)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원의 이익,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했을 때, 기업적 운영방식이 아니므로 OECD 기준의 A를 충족하지 않는다.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e, 1999)의 기준을 적용하면 법률에 의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세분류가 제시되고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자율성이 매우 작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와 C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이유로 SOCIAL ECONOMY EUROPE의 E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모

두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자활센터는 OECD기준의 A를 충족하지 않으며, 드푸르니(Defourny, 2004)와 드푸르니&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 1999)의 기준에서는 설립은 자유롭지만 자활센터로 지정된 후에는 지원 및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어 B의 경우 일부충족하며 법률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의무가 없어 C는 미충족한다. SOCIAL ECONOMY EUROPE기준의 경우 이용자만이 구성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B를 일부 충족,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받으므로 E도 일부충족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본 연구의 3장에서 논의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를 기준으로 <표 2>의 유형에 구분에 따라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퍼지점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퍼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동조합으로 퍼지점수는 0.5점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특정지역에 기반하거나 특정집단 구성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우애조합, 지역공동체에서 출발한다. 이 조직들은 유럽에서 전형적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특정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전체 공익증진을 1로 보았을 때 중간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경제 논쟁에 비추어 볼 때 시장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중간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non-profit sector)과 비영리추구 조직(non-for-profit organizations)을 구별한다. 두 개념 모두 이익추구가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Wolpert and Reiner, 1985).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익 창출 활동이 불법이고, 잉여가 조직의 법정활동에 자동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반면 후자는 수익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 될 수 있다(Ilczuk, 2001; Moulart and Ailenei). 미국에서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은 상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부문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Lorendahl, 1997).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제3부문과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이 포함되며 상업적 특성을 가진 조직도 포함된다. 즉,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수익추구활동은 동 조직이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시장의 일반기업들과 유사하게 시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시장성, 즉 조직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수익추구활동이 강조되면서도 일반기업만큼 강조되지는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조

직에서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수혜범위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간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권고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협동조합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설립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상대비교했을 때 수혜범위에 있어서도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사회적경제조직의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지어지는 기준은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른 16개 조직들의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고용노동부(2014)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방안”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의 전체 93%가 일자리제공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자리제공형을 선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일자리제공형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며, 오히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은선, 2015b: 636-638). 선행연구 결과 및 지역사회공헌형과 기타형 등의 다른 사회적기업 유형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적기업의 목적성과 수혜범위는 협동조합보다 높다. 또한 시장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수익추구활동을 하고 이익이 발생해야한다는 것이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다.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배분의 제한은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을만큼 시장성이 강조되므로 협동조합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직의 정의와 목적, 운영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어 명시될 만큼 사회적목적성이 높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 조합원에 한정해 제품과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된 조직이다. 따라서 수혜범위도 일반 협동조합보다 높다. 반면 시장성은 이 법의 제 93조와 제97조를 참고하였을 때 일반 협동조합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생활협동조합은 국내에서 특히 1990년대부터 급증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행연구와 생활협동조합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물품을 거래하는 것보다 매장을 운영하여 일반시민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가 다수였다. 따라서 시장성과 수혜범위가 일반 협동조합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에 비해 목적성이 높거나 낮음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수혜범위의 경우 지역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낮지만, 협동조

합에 비해서는 높다. 시장성의 경우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 다수이므로 협동조합보다는 시장성이 높다.

자활기업의 경우 조직의 목적성에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익보다 공익 추구의 성격이 강하고 협동조합보다 높은 수준이며, 조직의 설립목적 자체가 자활기업 설립을 통한 조직의 수익추구이므로 시장성이 협동조합에 비해 높다. 다만 수혜범위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구성원에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

농어업 법인단체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목적성 수준이 동일하다. 농어업 법인단체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데 영농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시장성을 보이나, 농업회사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장성이 상당히 높다.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들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농어업법인은 자활기업보다 공익성이 낮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장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혜범위는 자활기업만큼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금융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간주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농·수협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앙회, 즉 지주회사 역시 신협, 새마을금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회 회의록 중 일부에서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계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역사가 오래 되었지요. 이것이 협동조합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장점을 골라내고, 어차피 모든 기관들이 좀 고쳐야 할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있고요. 그래서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그 기능은 점차 논의를 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서 가자는 취지를 저희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2014. 11. 12. p.61

박원석 위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경제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포괄한다는 게.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3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2014. 12. 3. p.12

즉,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목적성이 협동조합에 비해 매우 낮고, 시장성은 상당히 높다. 새

마을금고의 경우 주소지에 제한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범위는 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연초 협동조합은 일부 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된 구성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므로 일반 협동조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목적성을 보인다. 반면 시장성은 농어업법인보다 낮지만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수혜범위에 있어서는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중간수준에 위치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자활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목적성을 갖는데,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고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일정비율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성에서 협동조합보다는 공익수준이 더 높다. 시장성은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수혜범위는 자활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에 비해 낮다.

〈표 6〉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퍼지점수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
사회적기업	0.95	0.95	0.95
협동조합	0.50	0.50	0.50
사회적협동조합	0.95	0.18	0.95
생활협동조합	0.50	0.82	0.82
마을기업	0.50	0.82	0.82
자활기업	0.82	0.82	0.18
농어업 법인단체	0.50	0.95	0.18
신협	0.05	0.95	0.95
농·수협 지역조합	0.50	0.82	0.50
새마을 금고	0.05	0.95	0.95
산림조합	0.50	0.82	0.50
중소기업 협동조합	0.50	0.82	0.50
업연초 협동조합	0.50	0.82	0.50
장애인표준사업장	0.82	0.95	0.18
사회복지법인	0.95	0.05	0.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95	0.05	0.18
자활센터	0.95	0.05	0.18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과 수혜범위가 협동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나 시장성이 강조되는 조직이 아니므로 협동조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센터는 협동조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가지므로 목적성이 높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활센터는 해당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조직의 사업내용 자체가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시장성을 보이며, 수혜범위도 낮다.

퍼지점수를 활용해 <표 2>에서 제시한 유형화 모델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화 할 수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가 가장 높은 수준인 통합적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해당한다.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 협동조합은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 분류될 수 있으나 퍼지점수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0.5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자활기업, 농업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준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공공부조형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해당되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익추구라는 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의 일반기업과 차별점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은 엄밀히 말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앞선 <표 5>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적합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공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성은 있으나 시장성이 본질적으로 낮은 유형이다. 여기서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수익 추구가 크게 중요한 조직들이 아니다. 앞서 <표 2>의 정부지원정책과 대조해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이 주요한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직들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비해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시장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지원이 없다면 실제 조직 운영을 위한 수익성과 창출이 특히 어려운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과 공식문서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므로 이 조직이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관련된 법률적 보완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597개,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5개에 달하며 이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²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표 6>의 퍼지점수에서도 다른 협동조합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관련 제도 및 법률의 보완

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검색일: 2016. 12. 20)

이 필요하다.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인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수혜범위가 한정적인 조직이다. 이 조직들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자활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이 지원되는 반면 농어업법인단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만큼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법인의 한 유형인 농업회사는 일반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영농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의 형태에는 농업회사와 다른 지원, 즉 자활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높은 수준의 목적성과 시장성, 수혜범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들간의 지원정책은 상당히 상이하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마을기업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 유형에 소속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정책지원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동 유형에 속하는 조직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보완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영업초 협동조합은 퍼지점수가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통합적/준통합적 유형으로 구분함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조직들은 퍼지 이념형 유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들이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7〉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소속 유형

	퍼지셋 이념형	소속유형	소속조직
1	P*M*S	통합적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영업초 협동조합)
2	P*M*s	준통합적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
3	P*m*S	목적지향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4	P*m*s	준목적지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5	p*M*S	기업형	신협, 새마을금고
6	p*M*s	준기업형	-
7	p*m*S	공공부조형	-
8	p*m*s	-	-

VI.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조직들을 유형화하여 적합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어떤 조직이 어떤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표 5). 또한 퍼지셋 Calibration 함수를 통해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를 퍼지셋 소속점수로 변환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목적성은 '조직 설립 목적의 공익추구 정도', 시장성은 '조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수익추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혜범위는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 등으로 정의하였다. 퍼지 이념형 분석결과 목적성, 시장성, 수혜범위가 가장 높은 수준인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해당되었으며, 준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자활기업, 농어업 법인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이 해당되었다.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 협동조합은 <표 7>에서 통합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표기하였으나 퍼지점수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0.5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준통합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준목적지향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등이, 그리고 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해당되었으나 준기업형 사회적경제조직, 공공부조형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 혹은 이 조직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지만,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구체적으로 범주화 하고 이들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화 및 특성 규명은 조직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의 연구로서 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대상이 되는 조직 내 세부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농어업법인도 협동조합 형태와 회사 형태가 존재하며, 일반협동조합도 세부 협동조합으로 세분류된다. 이 세부조직들은 17개로 분류된 상위 조직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세부조직의 특성이 상이할 것인 바,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의 판정기준으로 활용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안과 정부공식문서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혹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세부 정책지원 등이 고려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논의되는 많은 조직들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나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이 보완 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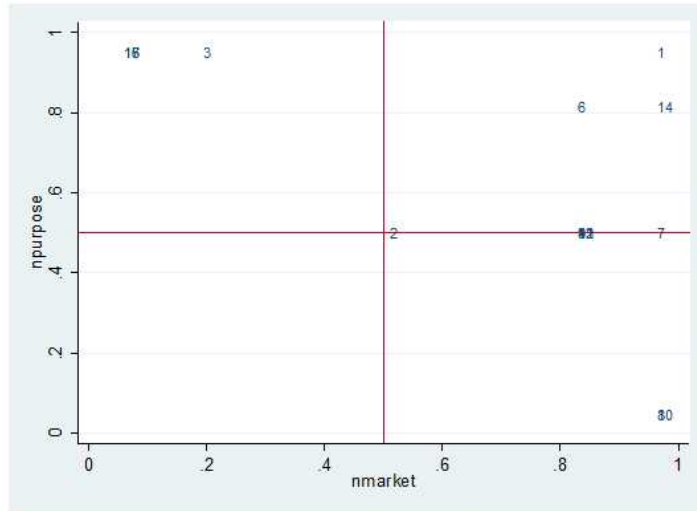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4).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2016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증보판)”
- 기획재정부위원회. (2014a).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4. 11.
- 기획재정부위원회. (2014b).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4. 11.
- 김영철. (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1(1): 275-299.
- 김의영·임기홍. (2015). “한국 사회적경제조직 지형도”. 「OUGHTOPIA」. 30(1): 61-92.
- 김종일. (2010). “대륙복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 집합 이념형 분석, 2000-2007”, 「사회보장연구」. 26(2): 253-284.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35-71.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
- 박석희. (2012). “퍼지집합분석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분석과 함의”. 「한국행정연구」, 21(3): 175-202.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전망」. 75: 11-46.
- 신명호. (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서울
- 신상철. (2016).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Urban Affairs」. January 2016: .25-29.
-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博英社.
- 이은선. (2015a). 「사회적기업 조직군의 성장 및 특성에 관한 분석: 조직생태학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은선. (2015b). “국내 사회적기업 조직군의 특성: 정책의 결과인가, 경쟁의 결과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4(4): 617-642.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5-34.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4). “협동조합 지원사업 안내”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이론의 활용의 모색”. 「정부학연구」, 15(3): 307-336.
- 최조순. (2013).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1(1): 3-32.
- 행정자치부. (2016).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Kim Alter(2004),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September.
- Defourny, J.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C. Borzaga, & J.Defourny(Eds.)(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 Develtere, P. (1999). The social economy: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17-47.
- Defourny, J. & M. Nyssens.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M. Nyssens(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ew York, NY: Routledge
- FIELDS, C. R. I. O.,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Ilczuk, D. (2001). Private action for the public good: regulations, incentives and examples of practice. Council of Europe.
- Kvist, J. (1999).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 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231-252.
- Lorendahl, B. (1997). Integrating the public and cooperative/social economy: Towards a new Swedish model.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68(3), 379-395.
- Monzon, J. L., & Chaves, R. (2008). The European social economy: concept and dimensions of the third sector.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9(3-4), 549-577.
- Moulaert, F., & Ailenei, O. (2005).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42(11), 2037-2053.
- Ragin, Charles.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rtoi, G.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033-1053.
- Wolpert, J., & Reiner, T. (1985). The not-for-profit sector in stable and growing metropolitan regions. *Urban Affairs Review*, 20(4), 487-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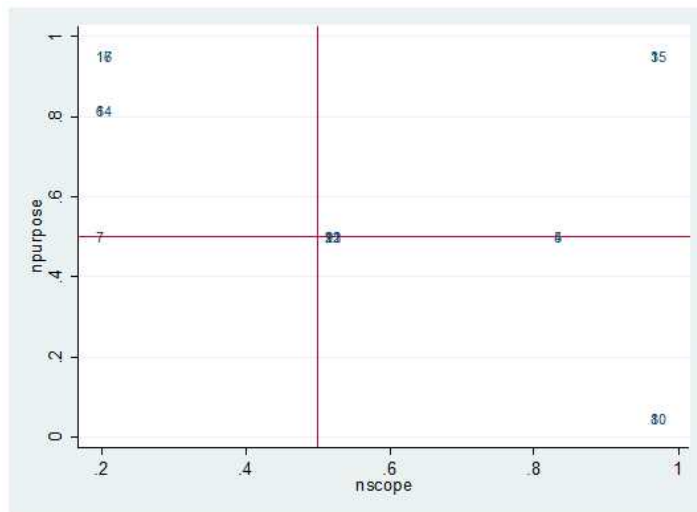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www.nfcf.or.kr>)
서울사회적경제 포털. (<http://sehub.net>)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http://www.ktgo.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johap.kbiz.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부록 1〉 시장성과 목적성 기준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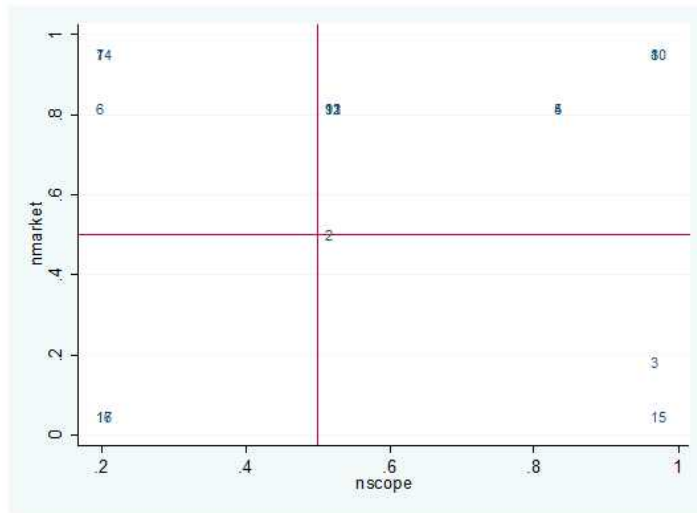
주) 1: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3:사회적협동조합, 4: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6:자활기업, 7:농어업법인단체, 8:신탁, 9:농·수협, 10:새마을금고, 11:산림조합, 12:중소기업 협동조합, 13:업연초 협동조합, 14:장애인표준사업장, 15:사회복지법인, 16: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자활센터

〈부록 2〉 수혜범위와 목적성 기준 유형화



주) 1: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3:사회적협동조합, 4: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6:자활기업, 7:농어업법인단체, 8:신탁, 9:농·수협, 10:새마을금고, 11:산림조합, 12:중소기업 협동조합, 13:업연초 협동조합, 14:장애인표준사업장, 15:사회복지법인, 16: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자활센터

〈부록 3〉 수혜범위와 시장성 기준 유형화



주) 1: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3:사회적협동조합, 4: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6:자활기업, 7:농어업법인단체, 8:신탁, 9:농·수협, 10:새마을금고, 11:산림조합, 12:중소기업 협동조합, 13:업연초 협동조합, 14:장애인표준사업장, 15:사회복지법인, 16: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자활센터

A Typolog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South Korea: Fuzzy Ideal Type Analysis

Lee, Eun Sun & Suk, Howon

This study is to aim for suggesting policy direction by articulating and categorizing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o social economy act. Main variables for categorizing are purpose, marketability, benefit scop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with fuzzy-set calibration function is utilized for categorization, which i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of social econom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highest scored organizations in each categorizing variables(integra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SE) are social enterprise, livelihood cooperative association, community business. Secondly, self-support business, agricultural corporation, standardized workplaces for disabilities are quasi-integra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QISE) because of the law score of benefit scope. Thirdly,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and social welfare plan corporate are located in the purpos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 self-support center are in the quasi-purpos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 Finally, corporate-orient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credit union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but none can be corresponded to quasi-corporate-oriented social organizations type. Additionally, we suggest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estry cooperatives, SMEs cooperatives,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 are ISE. However, fuzzy scores of these organizations are located in bifurcation point, so these organizations are positioned to the border line between ISE and QISE.

[Key Word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community business, Fuzzy ideal type analysis]